

신호위반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속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 무인단속카메라나 다른 운전자의 사진 및 영상 신고로 단속될 경우 부과됨^[1]
-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는 7만원^{[1] [2]}
-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음^[2]
- 사전납부 시 20% 감액 혜택^[2]
-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나 차량압류 가능^{[2] [3]}

범칙금

-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부과됨^{[1] [4]}
-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원과 벌점 15점 부과^{[1] [2] [3]}
-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됨^{[4] [2]}
- 미납 시 20% 가산금 부과, 2차 납부 기한 미준수 시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까지 가능^[4]
- 교통위반 기록이 운전경력증명서에 5년간 보존됨^[2]
-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영향^[2]

보호구역 신호위반

-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높음^[1]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무인단속 시 과태료 13만원(벌점 없음)^[4]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현장단속 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4]

벌점 관련 주의사항

-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 시 이후 1점당 1일씩 면허정지^[3]
-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2]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3].

신호위반과태료 금액

2025년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차종과 위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신호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금액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자전거, 손수레	3만원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금액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자전거, 손수레	6만원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은 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 부과됨 [5] [6]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벌점이 없음
 - 사전납부 시 20% 감액 혜택 [6]
- **범칙금:**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부과됨 [5] [7]
 - 승용차 기준 6만원과 벌점 15점 부과
 -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 교통위반 기록이 운전경력증명서에 5년간 보존됨 [7]
 -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영향 [7]

벌점 관련 주의사항: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 시 이후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6].

신호위반 시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호위반 시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다른 이유는 차량의 크기, 무게, 위험성 등에 따른 차등 부과 원칙 때문입니다.

차종별 과태료 차이

2025년 기준으로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됩니다:

차종	일반도로 과태료	보호구역 과태료
승합자동차	8만원	14만원
승용자동차	7만원	13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9만원
자전거, 손수레	3만원	6만원

차등 부과의 이유

- 위험성과 책임의 차이:** 승합차와 같은 대형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높은 책임을 부과합니다.
-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대형 차량의 법규 위반은 교통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형평성:** 일반적으로 상업용 차량(승합차 등)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은 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8] [9]}.
- 범칙금:**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벌점(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8] [9]}.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차등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10].



- <https://brunch.co.kr/@b9D6/279>
-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0>
-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867>
- <http://www.seoui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805>
- <https://all-powerful-review.tistory.com/181>
-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867>

7.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0>
8. <https://tra1.tistory.com/19>
9. <https://v.daum.net/v/5bac488c709b5300019670a6?f=p>
10. [https://www.law.go.kr/fIDownload.do?fISeq=34660265&fINm=\[별표+6\]+과태료의+부과기준\(제88조제4항+본문+관련\)](https://www.law.go.kr/fIDownload.do?fISeq=34660265&fINm=[별표+6]+과태료의+부과기준(제88조제4항+본문+관련))